

Vietnam Non Tariff Barriers Issue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재정부, 세관절차 관련법 개정



베트남 재정부, 세관절차 관련법 개정 발표

베트남 재정부는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세관절차, 세관검사 및 감독, 그리고 수출입품 조세행정 관련 법인 Decree No. 59/2018/ND-CP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6월 5일부터 시행됨. 또한 개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기존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Circular No. 39/2018/TT-BTC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 역시 6월 5일부터 시행됨

전자통관시스템 시행

개정법에 따르면, 통관 관련 문서들은 세관신고 등록 시 전자방식을 통해 제출되어야 함. 전자세관 시스템은 24시간 세관신고서 접수, 검사,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만약 세관신고 시 등록 정보가 추후 변경되어 국경관문(Border Gate)에서 제품 수출입 시 등록 정보와 다를 경우, 전자세관 시스템 자체가 이를 처리하여 불일치 정보 결과를 세관 신고자에게 통보함

세관신고 관련 신규 규정

이번 개정법은 전자 통관 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몇 가지 규제들을 변경함. 선하증권은 수입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제품들에 대한 선하증권이 많을 경우 세관신고서 등록 전 선하증권을 세관에 통보해야 함. 만약 수입품에 선하증권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세관신고 전 전자세관(e-customs)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품관리번호를 받아야 함

Vietnam Non Tariff Barriers Issue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만약 전자세관 시스템의 이상으로 통관절차 이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통관 신고자는 관세청 하부기관에 통관방식을 통보해야 함. 또한, 물품이 잘못된 배송지로 운반되었을 경우, 세관 신고자는 추가적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품 수령을 거절할 수 있음

가공제품 및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제품의 경우 세관 신고자는 수입신고서에 원자재 코드와 제품코드를 명시해야 함

새로 도입된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관절차 시간 절약 기대

이번 전자통관시스템이 새로 시행되면서 수출입 업자들은 항상 통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이행절차가 간편해지고 수출입 절차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으로 수출을 원하는 업체들은 전자통관 관련 시스템과 세관신고 관련 서류 절차를 숙지하여 통관거부에 대비해야 함

▶▶ 베트남 관세청, 세관절차 관련 개정법

<https://www.customs.gov.vn/Lists/TinHoatDong/ViewDetails.aspx?ID=27274&Category=Tin%20n%E1%BB%95i%20b%E1%BA%ADt>